

##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(Stakeholder Engagement Policy)

최종 수정일	'24. 05. 31.	최초 제정일	'23. 04. 28
Rev.	1	표준번호	-
담당부서	기업시민사무국		
검토자	기업시민사무국장		
승인자	대표이사 사장		

### 목적

포스코퓨처엠은 고객, 구성원,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큰 기업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. 본 정책은 공존·공생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소통해 나가기 위한 원칙과 실행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적용범위

본 정책은 포스코퓨처엠 전 사업장 및 출자법인에 적용된다. 포스코퓨처엠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.

### 기본원칙

#### 1. 이해관계자의 정의

-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활동, 제품, 서비스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혹은 단체를 의미한다. 이해관계자에는 고객, 임직원, 주주 및 투자자, 공급사, 지역사회, 정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포함될 수 있다

이해관계자 그룹	정의
고객	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해관계자로 당사의 경제 및 기업가치 창출의 근원
임직원	비즈니스 활동 및 성과창출의 주체로서 내부 이해관계자인 동시에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당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주체
주주 및 투자자	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무자본을 제공하는 이해관계자로서, 당사의 경영과 수익성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
공급사	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원료나 자재를 공급하는 이해관계자로서, 당사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
지역사회	화학, 이차전지소재 산업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, 기업운영에 관한 규제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당사의 영향력과 책임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이해관계자
정부 및 시민단체	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또는 단체로 당사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

- 이해관계자는 일반적인 기능, 규모 및 중요도, 기업활동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자가 받는 영향도 및 연관성, 해당 이해관계자 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및 관련성 등에 따라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.

## 2.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

- 진실, 공정, 정직을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 받는 기업상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불변의 가치로 인식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.
-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이해관계자와 주기적 소통을 통해 기업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, 부정적 영향을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, 그 과정에서 발견된 사회책임경영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### 3. 지역사회 존중 및 참여

-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보호하며,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국제노동기구(ILO) 협약 제169호 또는 유엔 선주민권리선언(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)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선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, 선주민의 사회, 경제 문화적 권리가 실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### 4. 지역사회 발전

-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사회·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## 실행방안

### 1.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 거버넌스

- 이해관계자 참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과 방향 설정 및 소통 절차, 이행 모니터링은 이해관계자 특성에 맞는 유관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 각 전담 부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및 리스크 점검절차 운영, 이해관계자 대응 활동의 이행, 기관 협력, 관련 VOC 접수 채널 운영 등을 수행한다.
-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중요 이슈 발생 시에는 이사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다.
-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성과 정보를 공시한다.

### 2. 이해관계자의 식별, 참여 및 소통 절차 마련

-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,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식별하고, 그 영향의 수준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.
-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, 여기에 의사소통 채널의 운영 주체와 주기 및 방식이 포함되도록 한다.

### 3. 지역사회 보호 및 참여 절차 마련

- 기업활동이 지역 주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역 주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, 지역 주민에게 사업수행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이 이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.
- 기업활동이 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보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.
- 기업활동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협의체계를 구축하여,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의 하에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홈페이지, 전화 등의 소통 채널은 상시 개방하여 운영한다.

### 4.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

-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,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며,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 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주기적으로 공유한다.
-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은 '사회공헌 활동 지침'에 따라 추진한다.

### 5. 고충처리제도

- 기업활동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. 윤리상담센터(Helpline), 비윤리 신고센터(Hotline) 등의 기존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, 신고자, 피해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조사 신청 및 이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